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 멀티에셋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(생략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생략)	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12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 5. (생략) ③(생략)	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12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</u>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
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23조(판매가격) ①(생 략)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고객이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4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	제23조(판매가격) ①(현행과 같음)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고객이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4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5영업일</u> 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6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7영업일</u> 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8영업일</u>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③(생 략)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5영업일</u> 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6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7영업일</u> 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8영업일</u>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26조(환매연기) ① ~ ④(생 략)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	제26조(환매연기) ① ~ ④(현행과 같음)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

	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제5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제6영업일</u>)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(생 략)	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5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6영업일</u>)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41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 (생 략) ⑤ 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제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생 략) ⑥ (생 략)	제41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42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	제42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

	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(생략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~ ④(생략)	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(현행과 같음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~ ④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45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~ 8.(생략) ② ~ ⑨(생략)	제45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u>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u> 3. ~ 8.(현행과 같음) ② ~ ⑨(현행과 같음)
	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</u>